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3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,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,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,
-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위탁조항을 신설함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협회에 위탁처리 하였던
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일부사무가

법률 제6731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
시·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

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

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

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

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

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

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위탁처리 하려는 것으로

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